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07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 허종식 · 정일영 · 문대림

유동수 • 이훈기 • 이용우

박선원 • 노종면 • 유상현

배준영 · 모경종 · 김교흥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를 활성화하여, 증가하는 전 력수요에 대하여 송전탑·송전선로 등 전력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갈 등과 낮은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 발생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전력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아울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도입하도록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 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하고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 율적 분산을 유도 및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를 확보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자급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법률 제 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전력 수요를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있 는 비율을 말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전기판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u>①</u> (현		
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			
리 정할 수 있다.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		
	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		
	률(전력 수요를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		
	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